

현행	개정안
2. ~ 3. (생략) (신설)	2. ~ 3.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생략)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기요금(단, 1급관사에 한함)	5.(단, 1급·2급관사에 한함)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수도요금(단, 1급관사에 한함)	7.(단, 1급·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관사에 한함)	8. 단, 1급·2급관사에 한함

94.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안번호	18
의결 년 월 일	95. 8. 12 (제40회)

제의년월일 : 1995. 8. 12

제 의 자 : 부천시의회회의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2. 내 용

○ 94.결산검사위원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시 의 원	김 일 섭	54. 11. 19	제무경제위원회 위원
공인회계사	김 선 구	63. 5. 4	김선구 공인회계사
시 장 추 천	박 준 익	36. 12. 15	원미1동장 역임